

정신보건법 2007 (Mental Health Act 2007)

[부속조항 3A 자발적 환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서

74A(3) 조항

권리에 대한 설명서

환자의 권리

정신보건시설에 입원한 환자에게 일어나는 일들과 환자의 권리에 대하여 알기를 원하시면 아래의 질문과 대답들을 읽어 보십시오.

정신보건시설에서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치료와 대체 요법 및 치료의 효과에 대한 환자의 질문에 의료진은 반드시 설명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진은 또한 치료 계획과 지속적인 간호를 위한 회복 계획에 대하여 반드시 설명을 해야 하고 환자가 동의 능력이 있을 경우 반드시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환자는 치료를 받거나 거절할 수 있으며 치료에 동의 했던 것을 언제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양이나 부적절한 약품을 환자에게 절대 투여할 수 없습니다.

정신보건시설에 어떤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정신보건시설에는 정신 질환의 상태가 매우 심해서 본인 동의 없이 입원되어 치료를 받고 있는 다른 환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퇴원할 수 있습니까?

환자는 언제든지 정신보건시설을 퇴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원 의향을 사전에 직원에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감독관이나 인준 받은 다른 의사가 더 이상의 간호나 치료가 환자에게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퇴원할 수 있습니다.

환자는 언제 자신이 원하지 않는데도 정신보건시설에 수용될 수 있습니까?

환자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신 보건 시설에 수용될 수 있는 경우는 시설내 의사로부터 정신 질환자 (mentally ill person) 혹은 정신장애자 (mentally disordered person)로 증명된 경우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지켜 보고 증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환자는 최고 2 시간까지 자신이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신보건시설에 수용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란 정신질환이 있고 환자 자신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해 정신보건시설에 수용될 필요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정신장애자란 이상 행동을 보이기 때문에 환자 자신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해 단기간 정신보건시설에 수용될 필요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최소한 1 명의 다른 의사에 의해 해당 환자가 정신질환자 혹은 정신 장애자라고 판명되지 않는 한 환자를 계속해서 시설에 수용할 수 없습니다. 담당의사 중 최소한 한 명은 정신과 전문의여야 합니다.

환자나 혹은 환자 케이스에 대한 결정을 재고할 수 있습니까?

만일 정신보건시설 내, 의료 감독관이 아닌 의사가 자발적 환자의 입원을 거절하거나 혹은 퇴원을 결정했다면 정신보건시설의 의료 감독관에게 그 의사의 결정에 대한 재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환자가 정신보건시설에 12개월 이상 있었을 경우에는 정신보건심사국(The Mental Health Review Tribunal)이 환자 케이스를 재고하고 또한 환자가 입원에 동의했는지를 확인할 것입니다. 정신보건심사국이 환자 케이스를 심사한 후, 퇴원을 지시할 수도 있습니다.

환자의 의향에 반하여 전기충격요법을 줄 수 있습니까?

줄 수 없습니다.

환자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나요?

시설내 직원, 사회복지사, 의사, 공식적인 방문자, 종교인, 자신의 변호사 혹은 정신보건 옹호단체 (Mental Health Advocacy Service)에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정신보건 옹호단체의 전화번호는 02 9745 4277 입니다.

환자가 공식 방문 직원을 만나 볼 수 있습니까?

환자가 공식 방문 직원을 만나볼 수 있는 지의 여부를 시설내 직원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공식 방문 직원의 방문을 준비해 줄 것입니다.

환자가 친구나 친척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까?

정신보건시설에 있는 동안 환자가 자신을 일차적으로 돌보는 사람을 포함하여 최고 2명까지 자신의 보호자로 지명할 수 있습니다. 지명된 보호자 혹은 환자를 일차적으로 돌보는 사람은 환자를 대신해서 환자와 관련된 정보를 알아볼 수 있고, 또한 환자의 시설 수용, 이송, 퇴원, 그리고 특별 정신치료 제안을 통보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환자와 지명된 보호자 혹은 환자를 일차적으로 돌보는 사람은 퇴원 후에 이루어지는 추후 치료에 대한 정보를 받을 권리도 주어집니다.